

< 붙임2 >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자 료



2020. 6.

서울특별시교육청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하겠습니다)」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및 관계 법령의 준용을 따르기 위함이며, 이에 따라 보상금 및 포상금의 산정기준과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 또, 공익제보위원회 회의의 서면의결의 법적 근거와, 조례에 근거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함에 있어서 예산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관련 법규는

-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 및 보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와, 보상금의 지급사유 및 지급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및 제77조의 별표 2와,
-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구조금을 우선 지급한 후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23조 및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32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 먼저 첫째, 신속한 구조금,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이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해 위원들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 이러할 때는 공익제보위원회 회의의 서면의결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둘째,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구조금 지급에 있어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구조금을 우선 지급한 후 공익제보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셋째, 공익제보에 따른 보상금 지급사유에 있어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을 따라 “계약변경 등의 의한 비용절감”의 사유를 신설하고, 교육청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보상금 지급사유로 신설하여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 넷째, 공익제보에 따른 보상금 산정기준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던 것을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을 따라 개정하여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다섯째, 조례 제19조의 제1호에 근거하여 공익제보 활성화
를 위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체를 구성·운
영함에 있어서 예산 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
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 및 개정이유

감사관 공익제보센터

1 공익제보위원회 회의의 서면의결 근거 마련

- 조례 제11조제4항 신설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188호, 2019. 10. 24.)」 제23조¹⁾ 및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186호, 2019. 10. 24.)」 제32조²⁾를 준용하여 서면의결의 근거 신설
- 신속한 구조금,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이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해 위원들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공익제보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 긴급한 필요에 따른 구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 조례 제13조제3항 신설
- 2017. 10. 3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2항³⁾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⁴⁾의 개정에 따라 구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 1) **제23조(서면의결)** 보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1. 신속한 구조금 지급결정이 요구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2) **제32조(서면의결)** 보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1. 신속한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결정이 요구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안건이 경미한 경우
- 3) **제27조(구조금)**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 구조금 지급에 있어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구조금을 우선 지급한 후 공익제보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3 공익제보에 따른 보상금 지급사유 확대

-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라목 신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2조제1항5)을 준용하여 지급사유 보완
-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청렴 주요업무 추진계획(2020. 2. 27.)」에서 ‘신고자 보상 및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확대’를 위해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의 정률(보상대상가액의 30%) 지급 및 상한액(30억) 폐지, 공익신고 보상·포상 지급사유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공익제보에 따른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에 의해 우리교육청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는 경우 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 마련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확대하기 위함

4 보상금 산정기준 보완에 따른 보상 확대

- 조례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서 “심의”를 “심의·의결”로 수정

- 4) 제27조(구조금의 지급 결정) ①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구조금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우선 지급한 후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한다.
- 5) 제72조(보상금의 지급사유) ①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6.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 제14조제2항의 ‘별표 1’ 신설 및 제15조제2항의 ‘별표’를 ‘별표 2’로 수정
- 2015. 10. 20.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개정으로 보상금 산정기준의 보완에 따라 제보자를 위한 지원 확대

※ 공익제보 관련 법률에 따른 보상금 산정기준 비교

보상대상가액	보상금의 산정기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근거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보상대상가액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5 협의체 구성·운영에 따른 예산 집행의 근거 신설

- 조례 제19조제2항 신설
- 현재 공익제보센터에서는 조례 제19조⁶⁾제1호에 근거하여 지역 내 시민 단체 등과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정착과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 [붙임] ‘공익제보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계획(감사관-2677, 2020. 2. 25.)’ 요약 자료 참조
- 조례에 의해 구성·운영되는 ‘협의체’의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6) 제19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교육감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법인 등이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2. 지역 내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관 등의 홍보 지원

'공익제보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체 운영 계획' 개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I 목적 및 추진방향

- 교육청과 민간의 전문단체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 제안 및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그리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목적으로 함
- 위 사업추진을 통해 협의체에 참여하는 각 단위 간 자원 및 정보 등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일상적 협력관계 구축

II 구성 및 운영 방안

- 민관협의체는 운영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민관협의체 위원은 공익제보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을 위촉함
- 현재 위촉된 외부위원(4명) : 한유나(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이은미(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오상석(호루라기재단), 안드레(내부제보실천운동)
- 협의체 회의는 분기별 정례 협의회 1회, 필요시 수시 협의회 개최
- 협의체 회의는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또는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서울교육의 반부패·청렴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제, 국제반부패회의(IACC) 워크숍 운영을 위한 협의 등을 중심으로 진행함
- 협의체 회의 참석자에게는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음(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민관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예산의 재원은 공익제보센터 운영비 및 국제반부패회의(IACC) 관련 운영 예산에서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하도록 함

III 2020년 정례 협의회 개최 일정(안)

순	날 짜	주요 협의 안건	비 고
1	3월 중순(예정)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과제 및 현안 논의, 국제반부패회의(IACC) 워크숍 관련 논의	취소
2	5월 21일(목)	제안 과제에 대한 평가 및 현안 논의, 국제반부패회의(IACC) 워크숍 관련 논의	
3	8월 20일(목)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과제 및 현안 논의, 국제반부패회의(IACC) 워크숍 관련 논의	
4	11월 26일(목)	제안 과제에 대한 평가 및 현안 논의, 국제반부패회의(IACC) 워크숍 관련 평가	